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5969호)

가.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12.

다. 회 부 일 : 2026. 1.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노후준비 지원법」이 있음.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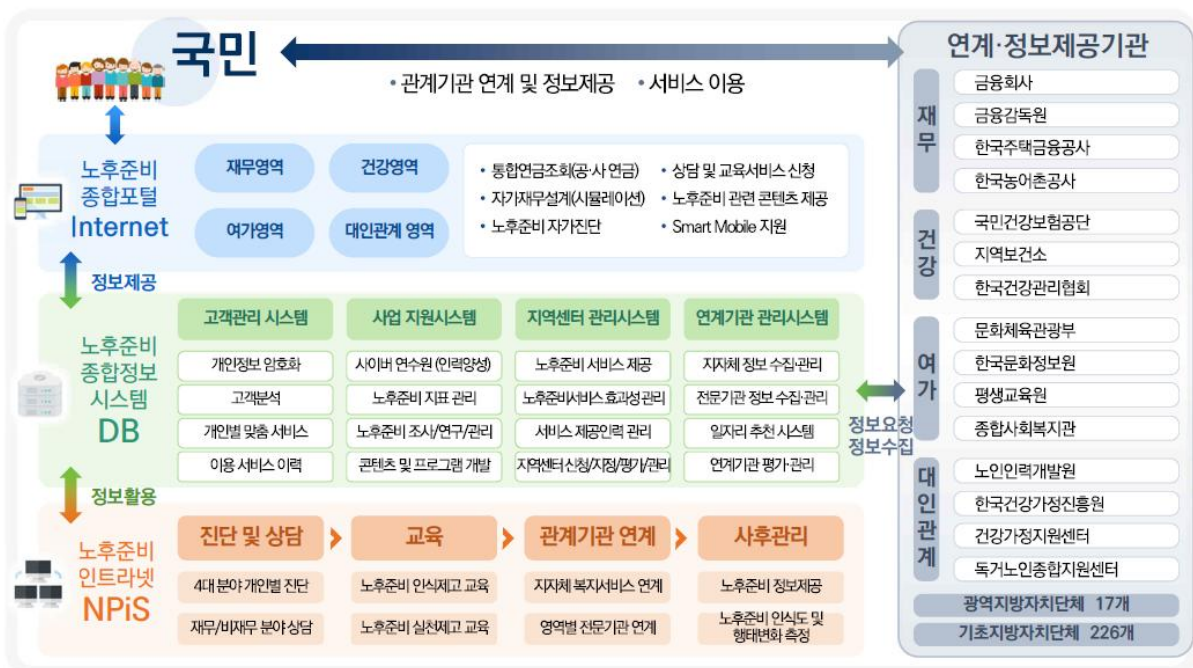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연금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21~‘25) 일부 과제로 추진되어 2025년 5월에 개시되었음.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연혁>

- (‘08. 10월) 노후종합포털 「행복나래」구축
- (‘22. 10월) 노후준비 온라인서비스(2종) 정부24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 및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 시스템 구축
- (‘25. 5월) 국민연금「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21~‘25)의 일부 과제로 추진되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오픈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운영되고 있음.
- 운영 정보로는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 금융회사 등의 재무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여가 정보,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대인관계정보 등이 있음.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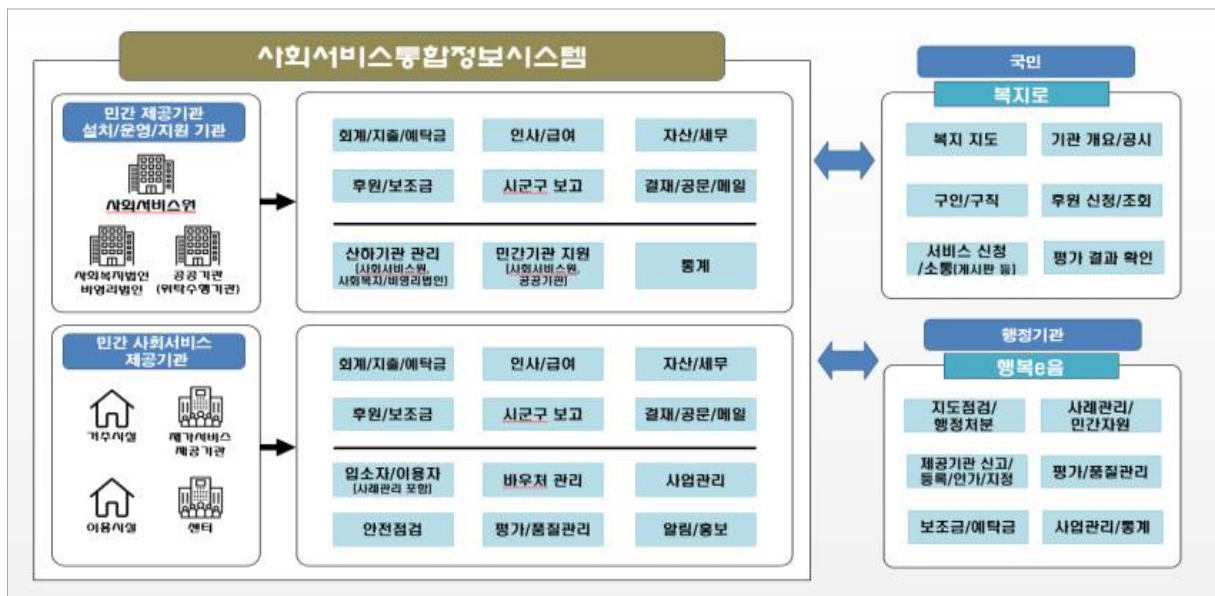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기관행정 업무, 대상자 관리, 사례관리를 정보화 기반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u>정보시스템</u>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현재 4만 7천여 개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 주요 기능으로는 ①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공유·협업,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계·예산, 인사·급여관리시스템 제공 및 전자결재나 공문 수·발신이 가능한 업무환경 지원, ③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법인·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및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업무기능 구현 등이 있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성도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양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노후준비와 관련된 지역 자원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시설이용이력을 활용한 심층 상담 및 진단 등도 가능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연계의 범위나 방법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아래 입법례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세부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입법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u>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 인터페이스 개발 등 행정적·기술적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내용과 예상 소요기간 >

구분	내용	세부내용	예상기간
사전 준비 단계	관계 부처 및 운영기관 간 협의	▶ 연계목적 공유, 연계대상 기관 보유 데이터 확인, 외부기관의 노후서비스 활용 방안 마련, 관련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3~4개월
기술적 연계 단계	연계 범위, 연계항목, 레이아웃 등 정의	▶ 연계정보 범위 및 항목 도출 ▶ 연계방식 결정·데이터 흐름·송수신에 따른 보안성 여부 등	2개월
	인터페이스 개발	▶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3~4개월
테스트 단계	연계 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 업무 적용성·효과성 검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	1개월
	시범운영		1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정보와 연계하여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연계를 통해 민간자원 연계를 확대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균형잡힌 진단·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00